

## 2006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김창룡 경남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새 언론중재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새로운 언론중재제도가 거두어 온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해 일선의 사례들을 제시해가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또한 포털 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정정보도나 손해 배상, 기사삭제 청구권 등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포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또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 제1주제 토론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장)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관할 범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허위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조정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미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며 조정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 '피해자'를 허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된다는 주장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만을 놓고 볼 때 일응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피해자'를 허위 보도에 의한 피해자로 한정할 경우 같은 법 내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 제26조 제1항, 제2항 등은 '피해자'의 조정 신청 범위를 정정보도청구로 한정하지 않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도 가능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법 전반을 살펴볼 때 '피해자'라는 표현은 입법 기술상 축약 표현을 위해 차용된 일반적인 청구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정 관할 범위의 문제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각 중재부의 중재부장 및 전문 변호사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 내에서도 '피해자'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범위

를 보다 넓게 유추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강무성(SBS 정책팀 차장) :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공 열쇠는 신뢰도라고 생각한다. 법 시행 초기에는 언론분쟁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언론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SBS의 입장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인보다는 정부기관의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중재법이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그 취지와 다르게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사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또한 개인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조심스럽게 보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듯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공인이나 공적 기관이 정정 또는 반론 등을 요청할 시에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빼고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일 경우 언론사의 입장을 존중해 판단을 내리는 운용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

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이 논의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공열쇠는 바로 신뢰도에 있어

이두영(뉴시스 전국부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청인과 정정보도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사건이 완료된 후, 신청인이 같은 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정 합의 후 여타 청구권을 제기하는 것에 있어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그 문제는 신청인과 언론사가 조정 합의를 할 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정합의서 등에 '보도를 내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부제소 합의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노향기(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시정권고 제도에 관해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정권고 제도는 이미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쳐 언론사로서는 권고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권고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엄격한 입장에서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새 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제3자 시정권고' 제도 역시 실

제 신청건수도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 인용된 건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

시정권고 제도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운 엄정한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른 여타 기구가 시정권고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관련 업무의 노하우를 갖춘 언론중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만 주위의 우려를 인식해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승훈(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판단 또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조정, 중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의견이나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내포된 사실적 주장 부분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반론보도 등의 신청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의견이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판단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의견이나 판단이라도 내포된 사실적 주장 부분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경우 반론보도 등의 신청 가능해

양정웅(MBC 법무저작권부) : 언론사에서 언론중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관할 문제, 다른 하나는 당사자 적격 문제다. 먼저 관할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는 사실적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히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일 경우

에 대한 피해보상을 많이 염두에 두었는데 최근에는 허위보도와 무관한 드라마에까지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당시에도 이 부분이 언론중재의 대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단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수용을 했다. 하지만 직권조정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키고 이를 언론사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관할이 없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즉 다시 피해자가 같은 건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이와 유사한 건들이 조정 사건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발표자에 따르면 당사자가 매 건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조정 관할 여부를 다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적격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을 비교적 명확하고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의 위험성을 고발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재생타이어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비슷한 건에 대해(동물병원이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수의과학협회가 제기한 건, 성형수술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자 의사들이 너도나도 성형수술을 과외로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 제기한 건 등) 모두 당사자 적격을 인정, 반론보도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법원의 모 판사는 '법원도 당사자 적격을 넓혀 가고 있는데다 언론중재는 사법 절차라고는 하지만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고려, 방송사

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과연 언론사가 이러한 부분이 사건화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심의에 넘어갈 때 이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궁금하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조정의 관할 범위는 단순히 편의적으로만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속히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것은 좋지만 손해배상의 조정 관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직권 조정에 있어서만큼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지만 직권조정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결국 실제 보도와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과의 직접적 관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집단명예훼손소송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되어 제기된 집단명예훼손소송의 당사자 범위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구하는 사람 개개인에까지 직접적으로 보도의 피해가 갈 것이냐 아니면 추상적으로만 피해가 가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형외과 의사가 수 천 명이 될 수도 수 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성형외과 수술의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대법

원의 입장이다. 그 부분에 대해 인원수를 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명을 넘어서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재생타이어업자가 한두 명밖에 없다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할 것이지만 재생타이어업자가 수 백 명이라 한다면 문제된 재생타이어가 어떤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에서 적절히 끊어야 한다고 본다.

###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해

이종일(EBS 인사법무팀 과장) : 담당 PD가 대리권을 수입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중재부에 의해 합의 조정되었는데 담당 PD의사와 달리 기관에서는 합의된 반론보도 문구를 방송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다. 하지만 각하되어 결국 신청인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청구해, 보도문을 내보낸 적이 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대리권을 수입 받아 조정에 참석할 경우 지나치게 합의 조정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권조정을 했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합의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지나친 합의 유도보다는 직권조정이 오히려 언론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니까)라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합의 조정을 했더라도 다시 취소해 재조정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든가 기관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은 당사자 합의를 무리하게 유도하지

말고 직권조정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직권조정은 그야말로 비상수단이다. 언론사에서 대리를 할 경우 언론사 내에서 확실하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 합의를 했는데 재심을 한다든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합의를 깨뜨린다면 절차가 너무 불안정해진다.

이수연(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한 여학생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사진을 모 언론사가 찍어서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여학생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다. (여름날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인해 신청인은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는 놀림을 받는 등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손해배상을 결정했고 해당 언론사에서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손배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만약 초상권 침해의 경우 신청인이 주장을 강하게 할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최근 대법원에서 초상권과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 기본 원칙은 공공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진 찍는 것을 모두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언론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능하며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그런 사정을 다 챙겨야 하

는 부분이므로 모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장소에 있다고 해서 초상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공공장소라고 해서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초상권 침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를 어디까지 봐야하는 것인가? 초상권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기자들은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기본적으로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느냐,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공인이었느냐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미국과 우리나라, 특히 유럽이 또 다르다.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찍힌 경우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와 유럽은 또 다르다.

일반 사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사진이 나가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다. 모자이크 처리나 뒷모습을 찍는 등 본인임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진을 찍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재단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사였던 변호사는 공공장소, 즉 공연장이나 야구장 등에서 찍는 사진은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발표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혼란스럽다. 공연장도 안 된다고 한다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사진을 찍힌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찍어도 좋고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어리더 옆에 나가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찍어도 좋다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봐도 된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예를 들어 치어리더 옆에 특이한 복장이나 분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춘 사람을 찍어서 보도했는데 초상권 침해로 항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위수 판사(발표자) : 공중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눈길을 끈 것이므로 사진을 찍어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된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현업 언론인과 법원 사이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인들은 사진 한 장이 곧 기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초상권 문제 때문에 자칫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고민이다.

김창룡(사회자) : 초상권 문제는 변수가 많다. 공개된 장소인지, 준 공개된 장소인지, 사적인 장소인지, 또 사인의 초상권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느냐 등의 여러 변수 때문에 일반화시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체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개인의 인격권이 고양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재형(SBS 정책팀/변호사) : 잘못된 보도로 인해 기업의 신용이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수십 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인과관계 인정 부분은 쉽게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론상 상당 인과 관계는 유추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보도가 나간 뒤 매출액이 떨어지는 추이 등을 비교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보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경영난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심흥식(국정홍보처 분석2팀장) : 정부에서 지엽말단적인 부분들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정부기관의 조정신청이 지난 몇 년 새 증가 추세임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면 언론의 사실에 부합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를 수용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언론에 대응하는 시스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라면 법률도 바꾸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아 민주적 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입장도 바르게 전달되고 언론도 자유롭게 보도해서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결국 민주적 소통

구조의 확보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어수용(총북중재부 중재부장) : 재판으로 가느냐 그것보다 더 간편하고 쉬운 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끝내느냐 하는 문제는 법체계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법에서 전치주의에 관한 문제, 청구 기간을 다르게 한 문제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전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중재제도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도영(부위원장) : 언론중재법 1년을 맞이해,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만약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위원장 : 이런 기회를 잘 가졌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와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상호 격의 없는 토론의 자리를 자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느끼는 문제점, 또 혹시 외부에서 잘못 바라본 언론중재위원회의 모습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성의 있는 해명, 이런 것을 통해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이해를 하게 될 때 신뢰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언론중재위원회의 궁극적 목적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중립적으로  
언론중재법 및 중재제도를 운용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해**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논의됐다. 하나는 정부기관의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것, 다른 하나는 초상권 침해 등을 과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관할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 조정 신청 건수 증가에 대해서는(최근의 경향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이 정부의 태생적 과정이나 국정담당자들의 생각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언론의 못마땅한 보도에 대한 이의를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념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 관념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신청 중에 보면 '이런 것까지 신청하나' 하는 건수나 각 부처별로 얼마나 많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 무언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외부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행여 정부에서 언론 전쟁을 벌이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하나의 전위대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신청을 하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혹여 이용하려 한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음을 믿어 달라.

손해배상 청구의 관할 범위에 관한 문제, 특히 그릇된 사실 보도와 관련되지 않는 음성권, 초상권 등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디까지 관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중재부장들과 함께 다각도로 토의를 했다. 그 결과, 적어도 언론보도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 한, 예컨대 보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사 기자가 한 장 찍은 사진과 같은 그런 것은 해당 안 되지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사진, 음성, 초상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물론 그 경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재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자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제2주제 토론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과 관련해서 공군 최초의 여자조종사를 취재해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제휴사인 CBS 노컷뉴스에 보냈고 CBS 노컷뉴스는 자신들의 제휴사인 포털사이트로 해당 기사를 보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다. CBS 노컷뉴스가 원제목을 바꿔 다른 제목을 달았고 이를 포털사이트가 그대로 받아 내보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기사의 바뀐 제목으로 취재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할 우려가 생기고 군인으로서의 신분마저 자칫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 번져 신속하게 포털사이

트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CBS 노컷뉴스 역시 기사 내용 안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제목을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한참만에 바꾸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는 한 군대를 제외하고 여전히 문제의 제목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개됐다.

이런 경우 취재원이 아닌 취재기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 원제목을 기사 내용에 있다하여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이 경우는 기사 전부를 다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노컷뉴스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했으므로 제휴를 맺은 근거가 되는 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만약에 기사 제목 수정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바꿨다고 해서 이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어떤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자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질문자가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무언가 소송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다행히 이번 건은 수습이 잘 됐지만 만약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그런 부분은 사실 법률적으

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예로 백령도의 군부대를 방문한 어떤 정치인사가 현직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그 피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대 최고 지휘자가 받게 되는 상황에서 보도가 그렇게 나갔고 그래서 지휘자가 국방부로부터 문책을 당했을 경우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법 외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작용해서 그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질문자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이 기사로 인해서 취재원이 피해를 보았고 질문자인 해당 취재기자 역시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모두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소송 건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김창룡(사회자) : 저작권 쪽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깐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해 두고 관련된 얘기가 더 나오면 그 때 진행하기로 하자. 포털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

#### 기사를 작성해 제공한 언론사와 기사를 받아 전재한 포털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 문제가 종종 발생해

윤태석(네이버 미디어서비스팀 차장) : 먼저 충북일보 건과 관련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포털의 책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북일보 건은 CBS 노컷뉴스가 대리중계해서 기사를 포털 쪽에 전송하고 이를 포털이 게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현재 24시간 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발제문에도 소개된 '전여옥 대변인' 사건도 기사를 작성해 제공한 CBS 노컷뉴스와 기사를 받아 전재한 네이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오류 및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배경에 포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발표자의 이야기에 대해 몇 가지 논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조선닷컴이 온라인상에 작성해 게재한 기사를 조선일보가 오프라인 지면에 게재했을 경우 그 기사로 피해를 본 사람은 과연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즉, 조선일보와 조선닷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전혀 다르지만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 보도를 조선일보가 취재해 올린 보도로 인식하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네이버에서 유통이 돼(그 기사가 조선일보의 기사라고 인식을 했든 안 했든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네이버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네이버가 시스템적으로 정정보도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 네이버가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포털을 찾는다는 논리에 따라 '네이버에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직접 정정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방문자수 3위 정도

하는 사이트에서(포털이 아닌) 조선일보의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가 문제가 되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면 과연 정정보도를 그 사이트에 청구할 수 있는지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정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은 언론사가 받은 기사의 일부를 인용 또는 전문을 게재했을 경우에 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는 기사를 제공받은 언론사가 하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포털사이트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제공되는 기사 전체가 외부 언론사의 기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기사의 일부를 전달받아 사용하면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일반 언론사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즉, 포털이 제공하는 기사가 방대하며 직접 기사 생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언론사처럼 모든 기사에 대해 일일이 직접 취재원에 접근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체적으로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언론사적인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일단은 정정보도 코너를 만들어 기존의 언론사들이 내는 ‘고침’, ‘바로잡습니다’, ‘정정과 반론’ 등을 게재하고 있고 24시간 뉴스센터를 통해 피해구제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정정보도 코너나 반론보도 코너처럼 이미 피해구제에 대한 시스템은 갖추어 놓은 상태다.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에 의해서 포털도 피해구제 및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된다면 그에 따라 곧바로 적용 가능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언론사와의 계약 문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결정적인 시스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조선일보와 계약할 때

는 조선일보와 NHN이 직접 뉴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조선닷컴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닷컴은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대리중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대리중계의 역할에는 제한이 있다. 원 저작물을 훼손할 수 없다든지 사실 확인 등을 직접 하기 어렵다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원 계약을 놓고 보면 네이버의 계약당사자는 조선닷컴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직접 네이버에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 위배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접촉하는 이유는 조선닷컴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고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정보도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조선일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일보와 직접 계약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닷컴이 있는 언론사들은 온라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계약 관계 자체가 얽히고설키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 포털의 경우, 기사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개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또한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만약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털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계약을 보면 포털이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포털이 뉴스 시장에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박영태(다음 미디어콘텐츠 팀장) : 충북일보 측 의견과 관련해, 만일 미디어다음이 충북일보와 직접 콘텐츠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목이 완전히 바뀌거나 편집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대리중계하는 과정에서 제휴를 맺은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바꾸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다. 기사제목은 원제목과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글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역시 24시간 응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이메일, 팩스, 전화로는 24시간 응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파급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지는 단호하다. 지난 10월 7일에 '열린사용자위원회'를 출범시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포털에 대해 갖는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포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포털 역시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적극적 노력 필요해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네이버 측이 언급한 내용 중 정정보도 코너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원 보도와 동일한 (신문이라 하면) 지면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정보도 코너를 마련해 그 곳에 정정보도를 올리는 것으로 언론중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원칙과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정보도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개하는 기사의 사실 확인이나 크로스체크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통신사나 언론사와 전제 계약을 맺어 기사를 받아 내보내는 지방언론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사를 전제하는 지방언론사 역시 전제하는 기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기사를 공급한 측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포털의 문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털도 사실을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문제가 된 기사의 취재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측을 채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채근해 사실 확인 여부를 파악하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가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언론사가 수정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포털에서 바로 정정보도를 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부분은 단순히 포털만을 두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언론사도 함께 모여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언론사 내부의 결정을 통해 닷컴사를 설립,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사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는 닷컴사 측에 판매하는 기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모두 넘겨주고 포털과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닷컴사가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닷컴)은 아

무런 권한이 없고 실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가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피해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것이 현재 업계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행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기사를 생산하면 이를 소속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을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춰 왔다. 하지만 최근 문화관광부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별도의 기사를 채용해 취재 보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닷컴사에 있는 기자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기사 중에 좋은 기사는 거꾸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별도로 보고 두 군데 모두와 계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김강덕(대전중재부 중재위원) : 포털사이트가 과연 언론중재법의 대상이나 아니냐하는 논란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도 언론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포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모른척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포털 측이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용기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박해옥(서울신문 뉴미디어국 부국장) : 현재 포털들은 뉴스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등 상당히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현재 네이

버를 예로 들면 서울신문은 네이버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네이버 메인화면의 기사 섹션에 서울신문 기사가 있을 경우, 이를 클릭하면 서울신문 기사가 뜨는 방식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일명 '배꼽박스' 형태의 뉴스박스를 만들어 그 안에 각 언론사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언론사별로 제공된 마당에서 해당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과연 그 포털,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게재된 서울신문 기사를 포털에 게재된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즉 (현재 논의되는 이야기대로 한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언론사별 뉴스 박스 중 서울신문 뉴스 박스에 들어가 기사를 클릭하게 되면 서울신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기사가 네이버의 신문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뉴스 소비처를 네이버 등 포털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편집·배포권 문제 역시, 각 뉴스 박스의 개별 언론사 코너 안에 있는 기사의 편집을 각 언론사가 직접 그 마당에 들어가 하게 되면 편집권은 개별 언론사에게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뉴스 박스 공간을 제공한 네이버 측에서는 항변의 논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편집·배포권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네이버가 제공한 마당에서 편집된 서울신문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이 달릴 경우 그 댓글 마당이 네이버라고 봐야하는 건지 서울신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네이버에서 제공한 뉴스 박스 안에 각 언론사가 편집한 기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됨으로)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해본다.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언론평해구제 제도 마련 필요해

무조건적으로 포털을 언론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 져야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음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뉴스공급방식 변화의 문제, 거기에 따른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웃 링크' 방식을 도입하려는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업계나 언론사 측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그 방식의 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은 인정한다. 만약 구글이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처럼 국내 포털사이트도 뉴스 공급 방식을 달리 한다면 뉴스 소비자가 포털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해옥(서울신문 뉴미디어국 부국장)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이버가 뉴스 박스 안에 개별 언론사가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면(물론 일부 언론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쩔 수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구창훈(KBS 지역/법무팀 변호사) :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고의·과실, 즉 귀책사유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이 둘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털이 책임은 없지만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있어 일정한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구제 입장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발표자는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를 배제하고 포털에 단독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포털사이트가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 어차피 해당 언론사 역시 포털과 마찬가지로 정정이나 반론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하므로 자칫 이중의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를 직접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포털이나 해당 언론사를 피해자가 선택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문제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는데 아직 피해 구제 가능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을 경우, 포털사이트로부터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포털사이트는 정보력이 약하고 입증방법이 적어 입증 책임 문제에서 피해를 보지만 해당 언론사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간의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한 결과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포털만을 단독 대상으로 삼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고려해봐야 한다.

**포털만을 단독 대상으로 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논란의 소지 있어**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라는 귀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서울남부지법의 '전여욱 대변인' 사건 판결을 보면 "포털사이트에게도 기사가 사실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의무가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일반 언론사처럼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즉 최대한 빨리 주의 의무를 기울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은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포털사와 언론사 따로따로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같은 기사임에도 입증 책임의 문제로 포털과 언론사가 다른 판결을 받는다면 부당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같은 의무를 지는 자이지만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선택권

을 주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포털에 대해 정정보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민법 764조에 보면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조항에 따르면 포털사가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사인지는 아닌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털이 언론사인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민법 764조를 본다면 그것을 조금 더 변형 발전시키면 정정보도 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의 경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더욱 필요해**

포털이 오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지만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를 사이트에 올리고 그 기사를 방치해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오보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고의·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일반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쟁점이 됐던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 문제)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을 보면 청도군청 홈페이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의 경우에는 더욱더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구창훈(KBS 지역/법무팀 변호사) : 주의 의무 위반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올라온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도 처음에는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가 오보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오보임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 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임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안재형(SBS 정책팀/변호사) : 포털을 굳이 언론사로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포털에 기사 게재로 인한 책임이 있느냐 여부와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포털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피해구제를 과연 일반불법행위로서 법원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려면 포털이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언론이어야 하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발생한다고 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굳이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더라도 '유사 언론' 또는 '방송사나 언론사로부터 영리적으로 기사를 받아 게재한 자' 등으로 정의해 입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발제문은 포털이 언론중재법 안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좀 더 세부적인 문제인데 인터넷 신문의 규정

을 확장시켜서 기사를 매개하는 행위까지 인터넷 신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노웅래 의원 안처럼 새로운 개념으로 언론을 정의해 포털을 넣을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든 괜찮지만 일단 법원 절차로 하면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편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당사자 권리구제에 훨씬 유용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접근했다.

윤태석(네이버 미디어서비스팀 차장) : 피해 접수 사례 등을 볼 때 피해를 받고 있으니 우선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 기사를 내리려면 해당 언론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받고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 걸린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를 주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네이버가 노웅래 의원 측의 발의안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던 것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우선 포털이 해당 기사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사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 네이버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고 언론중재법 상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 다.

### 포털에서의 피해구제 핵심은 문제의 보도가 유포되는 것을 얼마만큼 막느냐에 있어

그런데 발표자는 현재의 조정 절차를 따라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노웅래 의원의 법안처럼 일단 문제 기사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난 후 피해 당사자가 언

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만일 문제가 없으면 블라인드를 해제하면 되고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정이 된다면 기사를 삭제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구제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조정 절차를 따르다면 피해구제에 있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기사는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피해자는 끊임없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피해구제의 핵심, 특히 포털에서의 피해구제 핵심은 유포되는 것을 얼마만큼 막느냐에 있다고 본다.

이수언(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일반 개인의 경우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매체(오프라인)의 기사를 보고 신청하는 사례도 있지만 포털에 나온 기사를 보고 나서야 해당 오프라인 매체에 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확인해 신청한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포털에 기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척 우려되는 부분이다. 신문이 먼저 보도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포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포털이 신문 기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지만 전달하는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김창룡(사회자) : 포털 문제와 함께 오전 세션의 주제까지 논의를 넓혀 이야기해 달라.

장용택(영남일보 제1사회부장 겸 고충처리인) :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 언론사 데스크와 포털 담당자가 신속히 연락을 취해 포털사이트에서 신속하게 기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김창룡(사회자) :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한성일(중도일보 정치행정부 차장) : 무작위로 배포되면서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에서 포털 뉴스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전재우(국민일보 뉴미디어부 차장) : 네이버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면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에 편집되는 기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통 '파급력'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검색해서 보는 기사의 파급력보다 포털사에서 편집해 놓은 기사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포털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김영서(세계일보 심의위원) : 신문윤리위원회에서만 음란물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를 심의, 시정권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최근 음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적이 있는가?

위원장 :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해 심의를 하거나 시정권고를 한 적이 없다. 언론 보도와 무관한 소설 내용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석민(매일신문 문화부 차장) : 포털은 함부로 편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사 내용이 똑같더라도 제목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포털이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포털은 편집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편집권한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포털과 피해자, 원 기사를 쓴 언론사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작동되도록 애써야 한다.

포털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를 악용해 오히려 포털 기사의 비판적 기능을 억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정웅(MBC 법무저작권부) : 오프라인 매체에서 뉴스 공급을 받았다하더라도 노출여부는 포털에 권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절차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로부터 확인을 하고 언론사의 허락이 없는 한 내릴 수 없다는 식으로 언론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최근 모 재벌과 유명 탤런트의 결혼 보도의 경우는 다른 보도에 비해 신속하게 기사가 내려졌는데, 어떤 내부 절차에 따라 것처럼 신속하게 기사가 내려졌는지 궁금하다.

윤태석(네이버 미디어서비스팀 차장) : 기사를 내리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 측면도 있

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계약서상으로는 블라인드 처리 조항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문제가 없는 기사임에도 포털이 언론사 확인 없이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다. 단 한 건의 기사도 공급자의 요청 없이 삭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포털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

재벌과 유명 연예인과 관련한 부분은 관련 기사의 댓글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댓글 자체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댓글을 올린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는 등 기사와 상관없이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그러한 댓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등 더 이상 기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내리게 됐다.

이수연(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선정적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주길 바란다.

위원장 :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엄청난 파괴력을 생각할 때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가 됐으며 그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잘 귀담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잘 조합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있는 조화를 추구하는것

시정권고에 대해 간단히 다시 언급해보고자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어떤 선에서 조화롭고 균형있게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자체 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권고하는,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권고 제도의 범위를 신문 윤리적 차원으로까지 넓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엄밀하게 세워진 기준 위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다. 한편 새 법 시행과 함께 제3자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 중에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무척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제3자 신청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 4건만이 처리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제3자 신청 역시 심의 권고 기준에 정확히 해당되는

케이스여야 한다는 원칙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정권고의 역사가 20여 년 정도 된다. 시정권고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엄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정권고가 비록 권고적 효력을 가졌을 뿐이지만 언론사에 의해 단 한 건도 거부되거나 이의 신청이 없었고 언론사 스스로 내부 점검을 하는 계기로 작용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데 조금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정권고 제도는 아주 엄밀한 기준 하에 진행할 것이다. 시정권고결과 공표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공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

장시간 의견 개진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